국외출장결과보고서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6">내 역</th></tr>
<tr><td rowspan="2">출장자</td><td>소속</td><td>해양연구본부</td><td>성명</td><td>이혜영</td><td>직급</td><td>전문연구원</td></tr>
<tr><td>소속</td><td>경제전략연구본부</td><td>성명</td><td>박예나</td><td>직급</td><td>전문연구원</td></tr>
<tr><td>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td><td colspan="6">□ 현지조사(현장, 업무협의회)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발표)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td></tr>
<tr><td>관련사업
(예산항목)</td><td colspan="6">❍ 출장목적 : 로즈 아카데미(Rhodes Academy) 참석
❍ 관련사업 : 독도·해양법 연구센터 운영(일반) (사업기간 : 2023.1.1. ~ 2023.12.31.)</td></tr>
<tr><td rowspan="3">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계획</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2">보유 마일리지</td><td>활용계획</td><td>미활용 사유</td></tr>
<tr><td colspan="2">이혜영</td><td colspan="2"></td><td>미활용</td><td>보너스 항공권 없음</td></tr>
<tr><td colspan="2">박예나</td><td colspan="2"></td><td>미활용</td><td>보너스 항공권 없음</td></tr>
<tr><td>출장기간</td><td colspan="3">2023. 7. 1. ~ 2023. 7. 23.
(22박 23일)</td><td>출장지</td><td>그리스, 로데스</td></tr>
<tr><td rowspan="6">출장일정</td><td colspan="2">일자</td><td colspan="2">방문지</td><td colspan="2">주요업무*</td><td>항공편</td></tr>
<tr><td colspan="2">7. 1(토)</td><td colspan="2">부산(08:05) → 서울(09:10)
서울(11:25) → 프랑크푸르트(17:40)</td><td colspan="2">ㅇ 항공 이동(1박)
* 박예나 서울 출발</td><td>KE 1410
KE 945</td></tr>
<tr><td colspan="2">7. 2(일)</td><td colspan="2">프랑크푸르트(12:00) → 로데스(16:05)</td><td colspan="2">ㅇ 항공 이동</td><td>DE1594</td></tr>
<tr><td colspan="2">7. 2(수) ~
7. 21(금)</td><td colspan="2">로데스</td><td colspan="2">ㅇ 로즈 아카데미 참석</td><td></td></tr>
<tr><td colspan="2">7. 21(금)</td><td colspan="2">로데스(12:55) → 프랑크푸르트(22:20)</td><td colspan="2">ㅇ 항공 이동(1박)</td><td>DE1595</td></tr>
<tr><td colspan="2">7. 22(토) ~
7. 23(일)</td><td colspan="2">프랑크푸르트(19:40) → 서울(14:10)
서울(16:40) → 부산(17:45)</td><td colspan="2">ㅇ 항공 이동
* 박예나 서울 도착</td><td>KE946
KE1415</td></tr>
<tr><td>출장성과</td><td colspan="6">○ 출장목적 달성 정도(출장 계획 대비)
- 출장계획서에 따른 활동 계획을 이행하여 출장목적을 충실하게 달성
○ 주요 성과
-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주요 현안 관련 자료 수집 및 이해도 제고
- 해양법 및 해양정책 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 아이슬란드, 스페인, 칠레, 페루, 필리핀, 모리셔스 등 정부 기관과 연구소의 업무 담당자 및 유관 국제기구 전문가 49명 참석</td></tr>
<tr><td>향후계획</td><td colspan="6">○ 연구 주제 발굴 등에 활용
- 유엔해양법협약 및 해양정책 주요 현안 검토
○ 전문가 국제 네트워크 활용
- 연구과제 추진 시 국제기구 및 연구소, NGO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교류 및 성과 확산 추진</td></tr>
<tr><td>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td><td colspan="6"></td></tr>
</table>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발표)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업무	**로즈 아카데미 참섬 / 7월 2일(수) ~ 7월 21일(금)**
수행계획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국제법 현안 관련 강의 수료 - 일반강의 총 42개, 특별강의 총 4개, 워크숍 총 6회 ○ 해양법 및 해양정책 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로즈 아카데미(Rhodes Academy) 일정>

일자	방문일정	내용
7/2(일)	16:00–17:00 17:00–19:00	· 교재 픽업 · 오리엔테이션
7/3(월)	전일	· (1)유엔해양법협약 역사 및 개요, (2)영해 및 접속수역, (3)해협 및 군도수역 레짐, *리셉션
7/4(화)	전일	· (4)터키해협의 법적 레짐, (5)EEZ 레짐, (6)대륙붕 레짐, *항행 워크숍
7/5(수)	전일	· (7)해양과학 레짐, (8)환경법 레짐, (9)해양·대륙의 기원, *특별강의
7/6(목)	전일	· (10)공해 레짐, (11)심해저 레짐, (12) 심해 맵핑 *해양과학 워크숍
7/7(금)	전일	· (13)기후변화, (14)분쟁해결제도, (15)북극
7/8(토)	-	· 휴일
7/9(일)	-	· 휴일
7/10(월)	전일	· (16)대륙붕의 외측한계선, (17)영해기선, (18)해양경계획정, *특별강의
7/11(화)	전일	· (19)해양경계획정과 섬, (20)지중해 해양경계획정, (21)경계획정 워크숍 개요, *경계획정 워크숍
7/12(수)	전일	· (22)대륙붕한계위원회, (23)인류공동유산, (24)EEZ어업
7/13(목)	전일	· (25)공해어업, (26)국가관할권 이원의 생물다양성, (27)중앙북극해 어업, *생물자원 워크숍
7/14(금)	전일	· (28)대체에너지, (29)해저전선 및 파이프라인, (30)항만국통제 · 1, 2주차 필기시험
7/15(토)	-	· 휴일
7/16(일)	-	· 휴일
7/17(월)	전일	· (31)분쟁해결절차, (32)국제 소송, (33)해양환경, *특별강의
7/18(화)	전일	· (34)기후변화 저감·적응, (35)심해 채굴, (36)ITLOS 심해저 관할권, *특별강의
7/19(수)	전일	· (37)UNCLOS와 조정, (38)해양환경 판례법, (39) 블루카본과 해양보호구역, *블루카본 워크숍
7/20(목)	전일	· (40)기후변화 및 해양거버넌스, (41)환경법적 책임, (42)군함 레짐
7/21(금)	전일	· 구술 시험(총 3회) · 졸업식 및 수료식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수행결과	**<교육 내용>** **□ (1주차)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 및 레짐 형성 과정** ○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영해 및 접속수역, EEZ, 공해, 대륙붕, 심해저에서 국가의 권리 의무의 주요내용 개관 - 국가는 영해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EEZ에 대해서는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향유함 -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는 대륙붕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자유의 원칙 적용 - 심해저는 인류공동의 유산으로서 국가가 주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심해저 기구를 통한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운영 중 - 공해 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2개 이행협정을 채택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체제를 구성 ○ 항행(해협 및 군도수역 포함) 및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분쟁해결 등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국가의 권리 및 의무의 주요내용 개관 - 해양은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무해통항, 통과통항 제도에 기초하여 연안국, 기국 등 국가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 - 해양과학조사는 평화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함 - 국가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를 가지며, 유엔해양법협약은 분야별 오염원 관리체제를 구축·이행할 의무를 규정함 - 유엔해양법협약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간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 관할권에 관하여 규정함을 특징으로 함 ○ 해양과학조사, 기후변화, 극지의 물리적·환경적 현황(실측정보) 및 조사방식 등 검토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저 탐사 및 맵핑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해양의 광대함 및 물리적 특성에 따라 해양과학 및 지식의 축적에 한계가 존재 - 그러나 대륙붕 조사에 대한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과학조사 결과로 인해 대륙붕 체제에 대한 법적 공백 발생 - 지구 평균기온 상승, 극지 빙하 소실 등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고 있음을 재확인 **□ (2주차) 해양경계 획정(Delimitation), 대륙붕, 어업 및 해양생물다양성 관리 체계** ○ 국가간 해양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선, 섬, 간조노출지 등 - 통상기선, 직선기선이 적용되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기선을 설정(저조선)하고, 섬과 암석, 간조노출지 해당여부에 따라 영해 및 EEZ의 범위가 상이하게 적용됨 - 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형평한 결과의 도출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3단계 접근법(형평한 방법론 채택(대체로 등거리 중간선), 관련 사정 고려(섬의 효과 등), 형평성 테스트 적용)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이 일반화되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수행결과	○ 사전예방적 접근법에 기초한 공해 어업 및 북극중앙해 어업 레짐의 구축·운영 - 유엔해양법협약 이행협정을 통해 경계왕래성 어족 및 회유성 어족을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이행협정은 사전예방원칙, 생태계접근법, 양립성 원칙 등에 기초하여 운영 - RFMOs를 통해 지역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TAC 등의 관리수단을 적용 - 불법비규제어업 대응을 위해 기국 및 항만국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 및 규범이 형성되어 운영 중 - 북극중앙해는 상업적 어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으로 비규제 상업어업을 금지하고 공동과학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협정을 채택하여 관리 ○ 국가관할권 이원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정을 채택하고 공해 및 심해저 관리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 이행 강화 - BBNJ 협정은 MGR. ABMTs, EIA,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주요 주제로 하며, 관련 다른 국제문서 및 기구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 에너지자원 활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해저케이블과 관선 설치에 관해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가 상이하게 적용됨 -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국가의 수요는 국가 간 영토분쟁의 주요 원인이며, 영토분쟁의 해결을 위해 자원의 공동 개발 또는 자원 개발 중지 등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함 - 해저케이블 설치는 EEZ 및 공해를 이용하는 대표적 행위로서 분쟁 발생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강제 관할권이 적용됨 **□ (3주차) 분쟁해결, 해양환경보호, 심해저 개발 제도** ○ 유엔해양법협약은 합의에 따른 평화적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가 합의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 중재재판부를 통한 강제 관할권에 관하여 규정 -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은 사법절차(협약 제15장, 제6부속서, 제11장이 적용), 강제적 중재절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기구의 관할권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포함, 관련 국제문서의 해석과 적용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됨 ○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보호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현안 대응에 한계를 보임 - 특정 해양오염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나, IMO 협약 등에 따라 구체적 해양환경보호 조치가 이루어짐 - 해수면 상승에 따라 국가의 영해 및 EEZ를 이루는 환경적 요인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들의 선제적 논의가 필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CCS 기술개발, 지구공학의 적용 등을 위한 연구 및 시범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 부족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양환경보호 규정의 일반성 및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이후 1992년 리우선언, 국제판례(MOX Plant 사건, Pulp Mills 사건 등)를 통해 법리가 발전 - 사전예방접근법의 적용, 초국경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의무, 실사(due diligence) 의무 등이 구체화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수행결과	○ 심해저 개발규칙 초안은 사전예방접근법이 반영된 규칙이나 심해저 개발에 따른 고유 생태계 및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 - 또한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예방조치(EIA, 손실보상 등)는 권리 및 의무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함 ○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은 강행력의 부족이 주요 현안으로 평가됨 - 기후변화 대응 의무는 정치적 기여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해결 조항도 실효성이 부족함 -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에 관한 규정이 기후변화에 따른 간접적 해양 영향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존재함 □ **시사점** ○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축된 국가 간 해양레짐은 해양공간을 수직적·수평적으로 구분하여 국가의 권리·의무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국가 간 해양레짐은 내수 및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를 구분하는 관리체제이나 국내 체재는 내수와 영해, 수역과 해저를 구분하지 않아 국제레짐보다 단순화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중 - 그러나 해양 이용·관리 수요가 확대되고, 이용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국내 해양관리 체계의 세분화 필요성이 대두 ○ 유엔BBNJ협정 채택에 따라 국제 해양 레짐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공해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 참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 필요 -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및 관리수단 다변화 등에 기여 - 국내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개발 경험을 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에 활용하여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제 해양환경 보전체계 구축에 기여 - UNCLOS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북극과는 달리 남극조약체제라는 독자적 법적레짐을 가지고 있는 남극에서 BBNJ 협정과의 관계 설정 및 앞으로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검토 ○ 과학기술의 발전 및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익의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필요 -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당시와 비교할 때, 대륙붕 형성 과정과 대륙붕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므로 최신 과학적 발견 및 기술 발전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국내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기여 방안에 관한 검토 필요 ○ 중앙북극해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CAOFA)는 전체적 해양보존 관리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북극 지역 관리에 초석이 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력이 필요성이 매우 중요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수행결과	**<주요 성과>** ○ 해양법 분야 저명한 학자* 및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 * A. J. Hoffman ITLOS 소장, 백진현, T. Heidar ITLOS 재판관, R. Wolfrum 막스 플랑크 연구소장, R. Beckman 싱가폴 국제법센터장, R. Long 세계해사대학 교수 등 ○ 전문가 인적 교류를 통해 협력 수요가 높은 주요 국가의 해양 현안 파악 - 모리셔스, 셰이셸 등 태평양 도서국가는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내 관리수단 다변화를 위한 정책 수요가 존재 - 터키-그리스, 스페인-프랑스, 이스라엘-레바논 등 지중해 해양영토 분쟁 현황 파악 -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안의 외국 오일탐사 선박 증대, 미크로네시아 등 태평양 도서국가 연근해의 외국 상업어선 증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 ○ 유엔해양법협약에 관한 지식 함양 및 해양법 및 정책 주요 현안 파악 - 해양영토의 구성요인인 섬, 암석, 간조노출지 등에 기초하여 영해, EEZ 및 대륙붕, 공해 및 심해저의 이용 및 보호, 관리 전반에 대한 강의 수강 * 강의별 주요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신규 현안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영토 구성요인의 상실 또는 훼손 등 국제 해양법 체계의 근원적 변동, 무인잠수정, 기후시스템 통제 기술 등 과학의 발전에 따른 법적 공백 발생 등 ○ 여수해양법아카데미 홍보 및 성과 공유 <2023 로즈 아카데미 수료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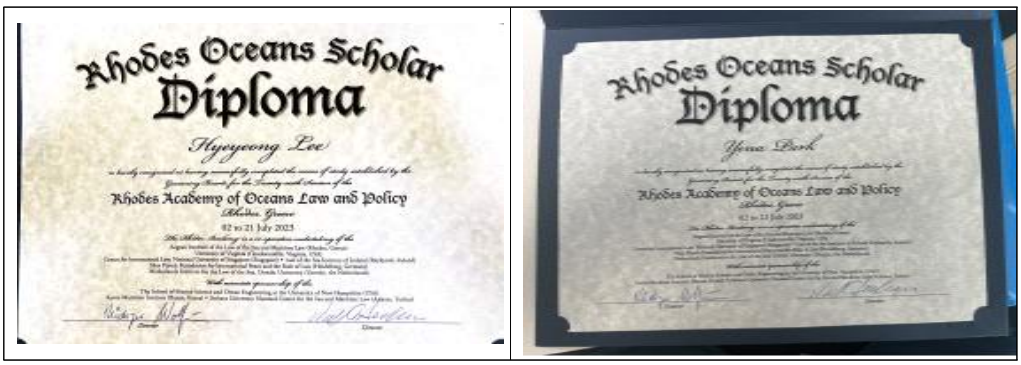 **<교육내용의 연구활용 계획>** **□ 극지연구** ○ 금번 아카데미는 BBNJ 협상 과정에서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였던 다수의 참가자들이 있었던 바, 전 기간에 걸쳐 BBNJ에 대한 관심사가 매우 높았음 - 극지 과학 연구성과의 극지 거버넌스 기여 방안과 이익 및 지식재산의 공유 및 BBNJ의 남북극의 적용 가능성이 극지 연구에 던지는 화두 파악 - BBNJ 협정과 CAO 어업협정이 협력하여 중앙북극해 공해 부분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보장에 대한 연구에 대한 구상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수행결과	* BBNJ 협정과 CAO 어업협정이 중앙 북극해 공해 부분에 대한 협력과 규제를 통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한 활용 예정 - 남극은 BBNJ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ATCM에서 결정할 것인바 논의 동향을 지켜본 후 남극 적용 가능성에 대한 향후 연구 구상 예정 ○ 러시아의 국가관할권 이원의 대륙붕 주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대륙붕 강의를 통해 러시아가 2023년 2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북극해 유라시아 분지 남동쪽 부분에 대한 수정 서브미션을 제출했음을 알게된 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향후 연구 활용 예정 **□ 해양 환경 및 관리** ○ 한중, 한일 EEZ 해양보호구역 공동 지정방안 연구 구상 -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고, 주변국 협력 강화 방안으로서 EEZ 해양보호구역 공동지정 가능성 탐색 - 스페인-프랑스 등 지중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양보호구역 공동지정이 국가간 자원, 영토분쟁 해결방안으로 기능 * SDG14, GBF 해양보호구역 지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EEZ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이 필요하나 주변국과의 해양경계가 미획정으로 국가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IMO PSSA 등 국가로부터 수요가 높은 분야의 제도와의 연계 추진을 통한 국제적 성과 확산 전략 병행 검토 필요 ○ 해양보호구역 관리수단 및 인식제고 방안 다변화 방안 모색 - 인도네시아 롬복 해양보호구역의 그린본드 제도, 지중해 센서기반 포유동물 탐지·보호 수단 등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해양보호구역 내 어업금지구역(no-take zone) 도입 등 실효적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관리수단 강화 노력이 필요함 **□ 해양 관리체계** ○ 국제·국내 해양 관리체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관리체계 조정 필요성 검토 - 국제적 해양 관리체계는 저조선을 기준으로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고, 대기, 해수면 및 해중, 해저를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어 국내와 국제 체계는 수직적·수평적으로 관리 구조가 상이함 - 국제 체계는 저조선을 기준으로 수직적·수평적 구역 구분에 따라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달리 정하고 있으나, 국제 체계는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내수, 영해, EEZ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어 양자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법률 적용의 문제점 등 검토를 통해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등

※ 참고자료(경비 세부내역)

1) 적용기준 : KMI 여비규정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중 나등급(그리스, 프랑크푸르트(경유)) 적용

2) 국외출장 공무상 필요에 의해 로밍 신청(공무통화내역 사후 실비정산)

3) 여행자보험, 로밍이용 요금, 제수수료 등 : 실비정산

* 예산항목 : 독도·해양법 연구센터 운영(일반사업)

4) 체재비

출장자	체재비				비고
	숙박비	일 비	식 비	소계	
이혜영	실비정산 **상한액 $185** (나지역 상한액 $137 * 150% * 90%)	($30 X 15일) + ($30 X 8일 X 0.9) = $666	$59 X 23일 = $1,357	$2,023	
박예나		($30 X 15일) + ($30 X 8일 X 0.9) = $666	$59 X 23일 = $1,357	$2,023	
합계				$4,046	

*** 본원 여비 규정 제 15조 1항에 근거,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

- 재정정보시스템 내 일비 및 식비 자동 환율 계산 미적용으로 원화 수기 기입
  * 이혜영 일비 : $666=874,000원 / 식비: $1357=1,781,000원 (선지급)
  * 박예나 일비 : $666=874,000원 / 식비: $1357=1,781,000원
  - 환율 : 1$=1,313.69원 (출장기안일 6.13 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

- 재정정보시스템 내 일비 및 식비 자동 환율 계산 미적용으로 원화 수기 기입
  * 이혜영 일비 : $666=889,000원(15,000원 추가지급) / 식비: $1357=1,812,000원 (31,000원 추가지급)
  * 박예나 일비 : $666=889,000원(15,000원 추가지급) / 식비: $1357=1,812,000원 (31,000원 추가지급)
  - 환율 : 1$=1,335.77원 (출장일 7.1 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

다운로드 다운로드 인쇄하기

기준일 : 2023년06월30일 고시회차 : 1회차 고시시간 : 08시23분40초 조회시각 : 2023년08월01일 17시17분31초

통화	현찰				송금		T/C 사실때	외화 수표 파실때	매매 기준율	환가 료율	미화 환산율
	사실 때		파실 때		보낼 때	받을 때					
	환율	Spread	환율	Spread							
미국 USD	1,335.77	1.75	1,289.83	1.75	1,325.60	1,300.00	0.00	1,297.47	1,312.80	6.96300	1.0000

< 참고 : 여비규정 제2장, 제15조 >

제15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국내출장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원장은 업무의 성격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별표 2>

국외출장여비 정액표

□ 국외출장여비

단위 : US$

직 급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원 장		가	50	160	실비 (상한액: 389)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usiness Class)
		나	50	117	실비 (상한액: 289)				
		다	50	87	실비 (상한액: 215)				
		라	50	73	실비 (상한액: 161)				
부원장		가	40	133	실비 (상한액: 282)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usiness Class)
		나	40	99	실비 (상한액: 207)				
		다	40	72	실비 (상한액: 162)				
		라	40	61	실비 (상한액: 108)				
선임연구위원으로 최상위부서장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8시간 이상 (Business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최상위부서장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연구위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가	30	81	실비 (상한액: 176)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직 급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나	30	59	실비 (상한액: 137)				
		다	30	44	실비 (상한액: 106)				
		라	30	37	실비 (상한액: 81)				
행정직	책임행정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선임행정원 전임행정원 행정원	가	30	81	실비 (상한액: 176)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0	59	실비 (상한액: 137)				
		다	30	44	실비 (상한액: 106)				
		라	30	37	실비 (상한액: 81)				

※ 최상위 부서장은 본부장, 부장, 감사실장을 의미

※ 직급별 자격기준

- 선임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선임연구위원인 자
- 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구위원인 자
- 상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은 부연구위원으로 기준 적용

※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구분 / 등급	대륙	국가 및 도시
가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도쿄, 홍콩, 싱가포르
	남·북아메리카주	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유럽주	런던, 모스크바, 파리, 제네바
	중동·아프리카주	-
나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또는 체류예정지에서 상기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나 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